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1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전병주, 김경훈, 김성준,
김원중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칠성, 봉양순,
송도호, 송재혁, 심미경,
오금란, 왕정순, 유만희,
유정희, 이민옥, 이상숙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임종국, 정준호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」 공포 · 시행(2025.5.1. 공포 · 시행) 등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소례에서 “시립학교”를 “공립학교”로 표기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맞춰 “전대”를 “사용 · 수익”으로 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서울특별시립학교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”로 수정함(안 제2조제1호).
- “전대”를 “사용 · 수익”으로 수정함(안 제10조제1항제10호, 안 제14조 등).
-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오기(誤記)된 내용을 수정함(안 서식 1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립학교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0호 중 “전대하거나 전대하려”를 “사용 · 수익하게 하거나 사용 · 수익하게하려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전대로 보는 행위)”를 “(다른 사람에게 사용 ·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대”를 “다른 사람에게 사용 · 수익하게 하는 것”으로 한다.

서식 1 중 “시 설명”을 “시설명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12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1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.
1. “학교시설”이란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립학교</u> 의 시설을 말한다.	1. ----- <u>서울특별시립학교</u> -----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 시설의 유지·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	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-----.
1.~9. (생 략)	1.~9. (현행과 같음)
10.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<u>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</u> 경우	10. ----- <u>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하려-</u> -----.
②~⑤ (생 략)	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전대로 보는 행위) 제10조 제1항제10호의 <u>전대로 보는</u>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14조(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) ----- <u>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것으</u> -----.

1. · 2. (생 략)

[서식 1]

학교시설 일시사용(변경) 허가
신청서(제5조 관련)

신청인	성명	전화	
	주소	FAX	
사용 시설명			
사용 목적			
사용 기간	년 월 일	시부터	
	년 월 일	시까지 (일간)	
사용 인원			
기타			
<p>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)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, 같은 조례 제5조(사용허가 신청)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인)</p> <p>○○○학교장 귀하</p>			
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[서식 1]

학교시설 일시사용(변경) 허가
신청서(제5조 관련)

신청인	성명	전화	
	주소	FAX	
사용 시설명			
사용 목적			
사용 기간	년 월 일	시부터	
	년 월 일	시까지 (일간)	
사용 인원			
기타			
<p>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)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, 같은 조례 제5조(사용허가 신청)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인)</p> <p>○○○학교장 귀하</p>			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2조(정의)제1호 및 서식 1의 용어를 수정(서울특별시립학교 →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)하고,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제1항제10호 및 제14조(전대로 보는 행위)의 용어를 수정(전대 →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는)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김진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